

용역계약조건

제1조(총칙)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제1회 전국 안전인 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_____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가격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가격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공사 범위 및 기간)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용역계약서]에 기재한 공사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자”는 제7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 ③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협회의 책임으로 용역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검수)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준공계 등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고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이행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자”는 검수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설계 변경)

설계의 의문점, 기타 불확실한 점이 있거나 일부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9조(자재 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자재는 모두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다.
2. 본 공사에서 사용될 자재는 모두 새제품이어야 하고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구매한 자재 중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사용가능한 새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된 자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자재를 보충하기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모든 자재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판매 등)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며, 진행 중인 본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 ③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임의변경
 2.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운송비 및 대여료
 3. 시설물의 파손 및 결손
 4. 본 공사 진행 중 부적절한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

- ④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의 수행능력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적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안전관리비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공사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다. 만일 “계약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지시한 업무를 스스로 이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계약자”가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②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지급을 면제 받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이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지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지급수단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요청을 불이행 한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제조합보증서
 - 2. 보증보험증권
- ② “계약상대자”는 제12조 규정에 따른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만일 “계약자”의 정당한 하자보수요청에 “계약상대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 ④ 본 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제16조(관계법규 적용 및 관청수속)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제반 수속절차를 대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전 1,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상호간 서면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18조(계약의 해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 또는 진행이 되었을 경우
2. 주요재산을 양도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등 기타 거래정지를 당하는 경우
4.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상호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제20조(계약이행상황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계약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 ①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 해지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목적물, 재료, 대여품에 관하여 발생된 손해와 인사사고, 화재, 도난 등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혹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 해결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결과물 등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 ③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가 본 계약 관련된 결과물 이외에 반영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성 관계없이 해당)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계약자”가 확인 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 수행 중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기타)

-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성질상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존속되어야 하는 조항은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다.
- ③ 본 계약은 상호간 최종적이고 완전한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상호간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 ④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